

## 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통영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1. 22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경고(1명)
직원	정직3월(1명), 감봉1월(1명), 견책(2명), 경고(2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□ 시재 관리 부적정 등

- 출납담당자는 현금 출납과 시재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, 출납정산표 상 인도금액 대비 실제 자동화기기 투입금액을 적게 투입하는 등 자동화기기 시재금 관리 및 현금 보관고 내 시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
- 매월 2회 실시하는 현금보유액 불시점검 시 형식적으로 점검하여 시재금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, 업무시간 중 현금보관고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관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고일 및 사고자를 특정하지 못함
-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였어야 하나, 이를 소홀히 하여 시재금 부족사고 등을 방지하지 못함

< 관련법규 >

- 「복무규정」 제3조, 제4조
- 「상호금융 출납규정」 제3조, 제4조, 제7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6조, 제22조, 제35조, 제36조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장 제47조
- 「통영수협 정관」 제52조 및 「직제규약」 제10조
- 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 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
- 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 제12조(징계양정기준) <별표> 징계양정기준표